

목 차

이것만은 꼭! 알아 두세요.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I. 행정·문화예술 분야4

1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신규)알자리정책과5

2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로 지원알자리정책과6

3 남동구 구인·구직 상담창구 운영알자리정책과7

4 통장 기본수당 인상총무과8

5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 인상체육진흥과9

6 남동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확대평생교육과10

7 남동구립도서관 OTT 서비스 운영(신규)평생교육과11

8 자동차세 1월 연납공제 이자율 변경평생교육과12

II. 사회복지 분야13

9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사업(신규)복지정책과14

1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서비스사업)(신규)복지정책과15

11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사업(신규)복지정책과16

12 기초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사회보장과17

13 노인일자리 증가 및 활동비(급여)인상노안장애과18

14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신규)노안장애과19

15 장애인 전통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신규)노안장애과20

III. 교육·출산·보육 분야21

1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 및 지급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여성가족과22

V. 생활·민원·환경 분야41

3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시청소행정과42

35 간석3동 주차장 및 쉼터 개방(신규)도시계획과43

36 남촌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신규)도시계획과44

37 남촌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도시계획과45

38 정당용 현수막게시대 지정·운영(신규)도시디자인과46

VI. 안전·교통·주택 분야47

39 드론 등 촬영시설 공지 방법 안내(신규)정보통신과48

40 구월3동 스마트 빌리지 조성(신규)안전총괄과49

41 저화소 방법 CCTV 교체안전총괄과50

42 도림1지구(소3-15호선)도로개설 사업도로과51

43 도림1지구(소2-2호선)도로개설 사업도로과52

44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신규)치수과53

45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신규)건축과54

46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사항 안내공동주택과55

47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주요사항 안내공동주택과56

17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만 2세 미만 자녀 양육시 지급액 인상 여성가족과23

18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기준 및 지급액 인상여성가족과24

19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 난방연료비 지원기준 및 지급액 인상여성가족과25

2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및 지급액 인상여성가족과26

21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규)여성가족과27

22 남동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이전 운영(신규)여성가족과28

23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아동복지과29

24 결식아동 급식화재단가 인상아동복지과30

2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확대보육정책과31

26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보육정책과32

27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신규)보육정책과33

IV. 위생·보건 분야34

28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보건행정과35

29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신규)건강증진과36

30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신규)건강증진과37

31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건강증진과38

32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확대건강증진과39

34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40

- 행정·문화예술 분야 -

- ❖ [일자리정책과]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신규)
- ❖ [일자리정책과]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 [일자리정책과] 남동구 구인·구직 상담창구 운영
- ❖ [총무과] 통장 기본수당 인상
- ❖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 인상
- ❖ [평생교육과] 남동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확대
- ❖ [평생교육과] 남동구립도서관 OTT 서비스 운영(신규)
- ❖ [세무2과] 자동차세 1월 연납공제 이자율 변경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사업 시행(신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부담금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과 성장을 도왔습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남동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지원대상 ▷ 기 업 · 제조, 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19~39세 미만 연소득 36백만원 이하이며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된 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 한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월 7만원 ※ 기업당 3인, 뿌리기업의 경우 5인 - 지원예산 : 58,800천원 (구비 100)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 032-453-6233
시행일 : 2024년 1월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시행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18세 ~ 39세)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지원내용 : 1인 1회, 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 인천시청 홈페이지 - 증빙자료 : 결제 영수증, 응시 증빙 서류, 본인 통장사본 - 지원예산 : 140,000천원(시비 100)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18세 ~ 39세)이면서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 23.12.1.이후 실시한 시험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지원내용 : 1인 1회, 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 증빙자료 : 결제 영수증, 응시 증빙 서류,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현재 미취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예산 : 67,500천원 (시비 100) - 접수처 : https://youth.incheon.go.kr/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 032-453-6235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시행예정]

남동구 구인·구직 상담창구 운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구직 상담창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창구를 통합 운영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구인·구직 일자리센터 상담창구 - 구 일자리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 구월권역 : 구월2동 · 간석권역 : 간석3동 · 만수권역 : 만수4동 · 논현권역 : 논현2동	◇ 구인·구직 일자리센터 상담창구 - 구 일자리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 구월권역 : 구월1동·2동 · 간석권역 : 간석3동 · 만수권역 : 만수4동 · 논현권역 : 논현1동·2동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취업지원팀 ☎ 032-453-6064
시행일 : 2024년 2월

통장 기본수당 인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훈령) 개정에 따라 규정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현장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장 기본수당을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 통장 기본수당 지급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 지원대상 : 통장 전원

- 지원금액(인/월)

기본수당 (인/월)	상여금 (인/2회)
300,000원	300,000원

※ 상여금 : 연 200% (설·추석)

2024년부터는

◇ 통장 기본수당 지급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 지원대상 : 통장 전원

- 지원금액(인/월) (수당 기준액 10만원 인상)

기본수당 (인/월)	상여금 (인/2회)
400,000원	400,000원

※ 상여금 : 연 200% (설·추석)

문의처 : 총무과 소통자치팀 ☎ 032-453-2237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 인상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은 5,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5,000원 금액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대 상 : 5~18세 저소득층 유 청소년

- 인 원 : 1,285명

- 내 용 : 1인당 매월 95,000원 지원

- 사 용 : 1월 ~ 12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대 상 : 19~64세 장애인

- 인 원 : 107명

- 내 용 : 1인당 매월 95,000원 지원

- 사 용 : 1월 ~ 12월

2024년부터는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대 상 : 5~18세 저소득층 유 청소년

- 인 원 : 1,790명

- 내 용 : 1인당 매월 100,000원 지원

- 사 용 : 1월 ~ 12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대 상 : 5~69세 장애인

- 인 원 : 202명

- 내 용 : 1인당 매월 110,000원 지원

- 사 용 : 1월 ~ 12월

문의처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032-453-627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남동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확대

남동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의 운영일수와 운영기관을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2023년

◇ 남동구립도서관 상호대차

- 운영기관

구 분	도서관	운영현황
남동구립도서관 5개관	남동논현, 소래, 서창, 만수2, 간석3	신청 ○ 제공 ○
공립작은도서관 7개관	만수3, 만수4, 만수6, 도림, 남춘, 간석5, 간석4	신청 ○ 제공 X
스마트도서관	간석오거리역	신청 ○ 제공 X
북카페	남동구청 책도란	신청 ○ 제공 X

- 이용대상 : 남동구립도서관 정회원

- 운영일수 : 주 3회(화, 목, 금)

- 운영방법

▷ 남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 리브로피아 신청

2024년부터는

◇ 남동구립도서관 상호대차

- 운영기관

구 분	도서관	운영현황
남동구립도서관 5개관	남동논현, 소래, 서창, 만수2, 간석3	신청 ○ 제공 ○
공립작은도서관 8개관	만수3, 만수6, 남춘, 어울마당, 만수4, 만수5, 간석4, 도림	신청 ○ 제공 X
스마트도서관	간석오거리역	신청 ○ 제공 X
북카페	남동구청 책도란	신청 ○ 제공 X

- 이용대상 : 남동구립도서관 정회원

- 운영일수 : 주 4회(화, 수, 목, 금)

- 운영방법

▷ 남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 리브로피아 신청

문의처 :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팀 ☎ 032-453-5940
시행일 : 2024년 1월

남동구립도서관 OTT 서비스 운영(신규)

DVD 매체를 통해 영상자료를 제공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OTT 서비스를 도입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2023년

◇ (신규사업)

2024년부터는

◇ 남동구립도서관 OTT 서비스 운영

- 운영기관 : 남동논현, 소래, 서창 도서관

- 이용대상 : 남동구립도서관 정회원

- 운영방법

▷ 디지털 자료실 내 지정된 OTT 좌석에서 이용 가능

- 제한사항

▷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디지털 자료실 내 시청이 제한됨

* OTT 서비스란?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문의처 :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팀 ☎ 032-453-5940
시행일 : 2024년 1월(예정)

자동차세 연납공제 이자를 변경

2024년부터 자동차세 연납공제 이자를 변경 시행됩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 및 징수방법) 제3항 및 제4항

2023년	2024년부터는
◇ 자동차세 연납공제 - 공제금액 계산식 - 연세액 × 선납일수 / 365 × 7% ※ 연세액 납부 기한 (연납월 말일)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 수 - 연세액 납부 - 매년 1, 3, 6, 9월	◇ 자동차세 연납공제 - 공제금액 계산식 - 연세액 × 선납일수 / 365 × 5% ※ 연세액 납부 기한 (연납월 말일)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 수 - 연납 공제 이자를 변경 - 7% → 5% (공제율 감소로 납부액 증가) - 연세액 납부 - 매년 1, 3, 6, 9월

문의처 : 남동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453-2390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사회복지 분야 -

-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사업 (신규)
- ◇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 ◇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사업 (신규)
- ◇ [사회보장과] 기초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 ◇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증가 및 활동비(급여)인상
- ◇ [노인장애인과]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신규)
-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신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사업 (신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 자격 승계 불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법률상 배우자 ※ 조례 개정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타시도 전입자 및 국가보훈부로 부터 사후에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자 - 지원내용 : 월 5만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 및 전입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방법 : 대상자 지정 예금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3. 12. 18(월)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2-453-250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질병,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가구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 돌봄으로 학업·취업 등에 제약을 받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24년 3월) - 지원대상 ▷ 질병·고립 등의 중장년 1인가구 ▷ 가족돌봄 청년 - 지원내용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간병 및 병원 동행 등 - 본인부담 : 면제~100%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신청 ▷ 대상자 개별 상담 후 지원결정

문의처 :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 032-453-2542
시행일 : 2024년 3월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사업(신규)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위기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 ▷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험군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 ▷ 사회적 고립 우려 다인가구 (노인 및 장애인 돌봄가구)
- ▷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 적용·선별 대상자 (기본원칙)

- 지원내용 : 유형별 서비스 제공

- ▷ 생활환경 및 행태개선 지원
- ▷ 공동체공간조성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사후유류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등

- 지원예산 : 25,000천원 (본인부담 없음)

- 지원방법 : 홍보를 통한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문의처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 032-453-2545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구민을 편하게
장애를 활기있게 남동을 새롭게

기초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초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확대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30%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중위 30%)
1인	2,077,892	623,368
2인	3,456,155	1,036,846
3인	4,434,816	1,330,445
4인	5,400,964	1,620,289
5인	6,330,688	1,899,206
6인	7,227,981	2,168,394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32%이하 가구

(단위 : 원)

가구원 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중위 32%)
1인	2,228,445	713,102
2인	3,682,609	1,178,435
3인	4,714,657	1,508,690
4인	5,729,913	1,833,572
5인	6,695,735	2,142,635
6인	7,618,369	2,437,878

문의처 : 사회보장과 기초생활팀 ☎ 032-453-2531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구민을 편하게
장애를 활기있게 남동을 새롭게

노인일자리 증가 및 활동비(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가 지난해보다 1,209개 증가하여 총 7,429개를 제공하며,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 사회서비스형은 4만원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업량

구분	사업량(개)	비고
총 계	6,220	
공익활동형	4,300	
사회서비스형	1,024	
시장형	646	
취업알선형	250	

- 활동비(급여)

구분	활동비(천원)	비고
공익활동형	270	
사회서비스형	594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업량

구분	사업량(개)	비고
총 계	7,429	
공익활동형	4,735	
사회서비스형	1,669	
시장형	787	
취업알선형	238	

- 활동비(급여)

구분	활동비(천원)	비고
공익활동형	290	
사회서비스형	634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032-453-5852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구민을 편하게
장애를 활기있게 남동을 새롭게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신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인천시민의 장애인 신규 등록 신청 시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 지원내용

- ▷ 거동 불편 및 동행가족이 없는 장애인인, 신규등록을 위해 차량지원 및 의료기관 방문 동행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남동구민

- 지원인원 : 연 20명

- 기 간 : '24년 1월~ 12월

- 추진절차

- ① 장애인등록상담(행정복지센터) ☎
- ② 동행서비스제공(장애인복지관) ☎
- ③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장애인복지관) ☎
- ④ 사후관리(장애인복지관)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 032-453-257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구민을 편하게
장애를 활기있게 남동을 새롭게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신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제3자)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감경해드립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등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장내용 : 전동 ▷ 이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보장기간 : '24. 1. 1. ~ 12. 31.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 032-453-2572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교육 · 출산 · 보육 분야 -

-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 및 지급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 ❖ [여성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만 2세 미만 자녀 양육시 지급액 인상
-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기준 및 지급액 인상
-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 난방연료비 지원기준 및 지급액 인상
- ❖ [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및 지급액 인상
- ❖ [여성가족과]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규)
- ❖ [여성가족과] 남동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이전 운영 (신규)
- ❖ [아동복지과]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 ❖ [아동복지과]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 인상
- ❖ [보육정책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확대
- ❖ [보육정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 ❖ [보육정책과]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 및 지급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지난 해보다 3% 인상, 아동양육비 지급단가를 지난 해보다 1만원 인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지난 해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지원금액(인/월)<table><tr><th>구분</th><th>2023년 지급액</th></tr><tr><td>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td><td>200,000원</td></tr></table> - 지원예산 : 9,525백만원 (국비80, 시비20)	구분	2023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0,000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지원금액(인/월)<table><tr><th>구분</th><th>2024년 지급액</th></tr><tr><td>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td><td>210,000원</td></tr></table> - 지원예산 : 11,508백만원 (국비80, 시비20)	구분	2024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10,000원
구분	2023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0,000원								
구분	2024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10,000원								

문의처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032-453-833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만 2세 미만 자녀 양육시 지급액 인상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2세 미만 자녀 양육 시 지급단가를 지난 해보다 5만원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
 - 지원금액(인/월)

구분	2023년 지급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350,000원

- 지원예산 : 77백만원
(국비80, 시비20)

2024년부터는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
 - 지원금액(인/월)

구분	지원기준	2024년 지급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2세 이상 자녀	350,000원
	만 2세 미만 자녀	400,000원

- 지원예산 : 55백만원
(국비80, 시비20)

문의처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032-453-833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기준 및 지급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기준이 지난해보다 3% 인상, 자녀교육비(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지급 단가를 지난해보다 초등학생 20,000원, 중·고등학생 18,000원 인상, 자녀교육비(중·고등학생 교통비) 지급단가를 지난해보다 20,000원 인상 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교육비 지원금액(인/연)

구분	지원기준	2023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초등학생 부교재비	168,000원(연)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276,000원(연)
	중·고등학생 교통비	160,000원(연)

- 지원예산 : 247백만원 (시비50, 구비50)

2024년부터는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자녀

- 자녀교육비 지원금액(인/연)

구분	지원기준	2024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초등학생 부교재비	188,000원(연)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294,000원(연)
	중·고등학생 교통비	180,000원(연)

- 지원예산 : 274백만원 (시비50, 구비50)

문의처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032-453-833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 난방연료비 지원기준 및 지급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이 지난해보다 3% 인상, 난방연료비 지급단가를 지난해보다 20,000원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족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난방연료비 지원금액(인/연) <table><tr><th>구분</th><th>2023년 지급액</th></tr><tr><td>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 (난방연료비 지원)</td><td>80,000원</td></tr></table> - 지원예산 : 147백만원 (시비50, 구비50)	구분	2023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80,000원	◇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한부모가족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난방연료비 지원금액(인/연) <table><tr><th>구분</th><th>2024년 지급액</th></tr><tr><td>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 (난방연료비 지원)</td><td>100,000원</td></tr></table> - 지원예산 : 178백만원 (시비50, 구비50)	구분	2024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100,000원
구분	2023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80,000원								
구분	2024년 지급액								
한부모가족 동절기생활안정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100,000원								

문의처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032-453-833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및 지급액 인상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이 지난해보다 3% 인상, 아동양육비 지급단가를 지난해보다 50,000원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인/월) <table><tr><th>구분</th><th>2023년 지급액</th></tr><tr><td>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td><td>200,000원</td></tr></table> - 지원예산 : 37백만원 (국비50, 시비50)	구분	2023년 지급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00,000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인/월) <table><tr><th>구분</th><th>2024년 지급액</th></tr><tr><td>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td><td>250,000원</td></tr></table> - 지원예산 : 54백만원 (국비50, 시비50)	구분	2024년 지급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50,000원
구분	2023년 지급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00,000원								
구분	2024년 지급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50,000원								

문의처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032-453-833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규)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다문화가구의 7세~18세 자녀 중 가족센터에서의 사례관리를 통해 교육활동비 지원 - 교육활동비 지원금액(인/연) <table><tr><th>구분</th><th>2024년 지급액</th></tr><tr><td>초등학생</td><td>400,000원</td></tr><tr><td>중학생</td><td>500,000원</td></tr><tr><td>고등학생</td><td>600,000원</td></tr></table> - 지원예산 : 366백만원 (국비50, 시비25, 구비25)	구분	2024년 지급액	초등학생	400,000원	중학생	500,000원	고등학생	600,000원
구분	2024년 지급액								
초등학생	400,000원								
중학생	500,000원								
고등학생	600,000원								

문의처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032-453-8332
시행일 : 2024년 2월(예정)

남동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이전 운영(신규)

협소했던 남동구가족센터 공간을 리모델링 이전하여 확장된 공간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교육·돌봄서비스 제공 및 세대·이웃간 교류·소통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 남동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이전 운영
- 위 치 : 남동구 문화서로62번길 13
(구월동, 남동구노인복지관)
 - 규 모 : 연면적 1,247㎡
(본관 2~4층, 별관 4층, 지하)
 - 구 성
 - ▷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 ▷ 대교육실(대강당)
 - ▷ 일반교육실
 - ▷ 상담실
 - ▷ 공동육아나눔터
 - ▷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 ▷ 사무실 등

문의처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032-453-8332
시행일 : 2024년 10월(예정)

구민을 편하게
정책을 알기 쉽게 남동을 새롭게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가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2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가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문의처 :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 ☎ 032-453-8348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구민을 편하게
정책을 알기 쉽게 남동을 새롭게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 인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의 최저단가를 지난해보다 1천원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 ② 차상위계층 아동
 - ③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⑦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위 대상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금액(원)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8,000	8,000

- 지원예산 : 3,740백만원
(시비50, 구비50)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① 수급자 가구의 아동
 - ② 차상위계층 아동
 - ③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⑦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위 대상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금액(원)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9,000	8,000

- 지원예산 : 3,789백만원
(시비50, 구비50)

문의처 : 아동복지과 아이돌봄팀 ☎ 032-453-835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구민을 편하게
정책을 알기 쉽게 남동을 새롭게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확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장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2. 1. 1.이후 출생아
 - 지원기간 : 0~23개월
 - 지원금액
 - ▷ 만0세 월 70만원
 - ▷ 만1세 월 35만원
 - * 24~86개월 미만은 기존 양육수당 지원

	2021.12.31.이전 출생아		2022.1.1.일 이후 출생아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0~11 개월	-	10만원	70만원	-
12~23 개월	-	15만원	35만원	-
24개월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지원예산 : 19,066백만원
(국비75, 시비17.5, 구비7.5)

-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만0세~만1세
 - 지원기간 : 0~23개월
 - 지원금액
 - ▷ 만0세(0~11개월) 월 100만원
 - ▷ 만1세(12~23개월) 월 50만원
 - * 24~86개월 미만은 기존 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0~11개월	100만원	-
12~23개월	50만원	-
24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지원예산 : 34,046백만원
(국비75, 시비17.5, 구비7.5)

문의처 :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 ☎ 032-453-836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구민을 편하게
정책을 알기 쉽게 남동을 새롭게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 당 200만원 - 지원방식 : 바우처 지원 원칙 (※ 예외 경우 현금 지원)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예산 : 3,842백만원 (국비75, 시비175, 구비 75)	◇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지원방식 : 바우처 지원 원칙 (※ 예외 경우 현금 지원)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예산 : 4,780백만원 (국비75, 시비175, 구비 75)

문의처 :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 ☎ 032-453-836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신규)

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천시 거주 임산부에게 50만원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50만원 - 지원방식 :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1회 지원 - 지원예산 : 2,051백만원 (시비 80, 구비 20)

문의처 :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 ☎ 032-453-8362
시행일 : 2024년 중

- 위생·보건 분야 -

- ❖ [보건행정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
- ❖ [건강증진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신규)
- ❖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규)
- ❖ [건강증진과]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 ❖ [건강증진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확대
-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이 개선되고 검사·유예 기간이 신설되어 '24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제2조제1항(건강진단 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 제2조제4항(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 - <u>검사기한 연장 불가</u> ▷ 검진일로부터 식품 1년 ▷ 학교급식 6개월 ※ 유흥분야 성매개감염병은 항목마다 다름	◇ 제2조제1항(건강진단 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u>파라티푸스</u> ◇ 제2조제4항(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부득이한 사유 발생(질병·사고)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u>검사기한 연장 가능(신설)</u> ▷ 검진일로부터 식품 1년 ▷ 학교급식 6개월 ※ 유흥분야 성매개감염병은 항목마다 다름

문의처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민원실) ☎ 032-453-5131~2, 5625, 6001
시행일 : 2024년 1월 8일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신규)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에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 기 간 : '24. 3.부터 - 대 상 : 등록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 내 용 ▷ 가정에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 건강 상담 ▷ 영아 발달 상담 ▷ 양육 교육 ▷ 정서 및 사회적지지 등 - 신 청 : 방문 및 전화 신청 등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453-5112
시행일 : 2024년 3월(예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신규)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기 간 : '24년 4월 부터 - 대 상 : 냉동난자 보유 부부 ※ 난임진단유무,소독수준 상관없음 - 내 용 ▷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 (난임시술비 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하나, 보조생식술비용 항목지원은 중복 불가) ▷ 난임 상담 ▷ 난임치료 및 비용지원 등 - 신 청 : 방문 및 전화 신청 등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453-5117
시행일 : 2024년 4월(예정)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지원대상 -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어르신 (1948.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1회) ※ 단, 과거 접종 완료자 제외 ◇ 접종장소 - 남동구 내 지정위탁의료기관 133개소 및 보건소	◇ 지원대상 -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 70세 이상 어르신 (1954.12.31. 이전 출생자)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59.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1회) ※ 단, 과거 접종 완료자 제외 ◇ 접종장소 - 남동구 내 지정위탁의료기관 133개소 및 보건소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453-5110
시행일 : 2024년 2월(예정)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확대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인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여(150명→300명)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 대 상 ▷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지역주민 - 대상인원 : 150명 - 내 용 ① 대상자 선정 및 등록 ② 건강위험 요인 여부에 따라 블루투스 기반의 혈압계, 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 지원 ③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 대 상 ▷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지역주민 - 대상인원 : 300명 - 내 용 ① 대상자 선정 및 등록 ② 건강위험 요인 여부에 따라 블루투스 기반의 혈압계, 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 지원 ③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문의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32-453-6015
시행일 : 2024년 1월(예정)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신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써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운영일시 : '24년 1월 예정 - 관할지역 : 장수서창동, 서창2동 - 장 소 : 서창남로 99 (서창아울마당 내 2~3층) - 사업내용 ▷ 만성질환 검사 및 상담 ▷ 기초체력측정 검사 및 상담 ▷ 치매안심센터 운영 ▷ 재활운동실 운영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 재활보조기구 대여 ▷ 각종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팀 ☎ 032-453-5974~5975
시행일 : 2024년 1월중 [예정]

-생활·민원·환경 분야 -

- ❖ [청소행정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시
- ❖ [도시재생과] 간석3동 주차장 및 쉼터 개방**(신규)**
- ❖ [도시재생과] 남촌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신규)**
- ❖ [도시재생과] 남촌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 [도시디자인과] 정당용 현수막게시대 지정·운영**(신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시

업종별로 매장 내 사용할 수 없거나 무상제공 할 수 없는 1회용품 품목 규제로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추진내용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막대 사용금지 ※ '23. 11. 23.까지 시행	◇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 추진시기 : '23. 11. 24.일부터 - 추진내용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 계도기간 연장 ▷ 젓는 막대 사용금지 ▷ 종이컵 금지 목록에서 제외
◇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종합소매업) ▷ '23년 11월 24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종합소매업) ▷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제 완화

문의처 :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 032-453-2563
시행일 : 2023년 11월 24일

간석3동 주차장 및 쉼터 개방**(신규)**

「간석3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노후 주택과 좁고 경사진 골목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등 마을 환경을 정비하여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간석3동 주차장 및 쉼터 개방 - 위 치 : 간석동 37-76번지 - 규 모 : 90㎡ - 구 성 ▷ 마을주차장 조성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주차장 확보 · 주민 주차 및 편의공간 조성하여 거주환경을 향상 ▷ 마을 쉼터 조성 · 마을 내 주요 도로에 인접한 곳에 쉼터 마련

문의처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032-453-2802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남촌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개관(신규)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생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주택밀집 지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공동체활성화 및 주민 주도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남촌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개관

- 위 치 : 남촌동 265-1번지
- 규 모 : 187.5㎡
- 구 성
 - ▷ 소매점(마을상점)
 - 마을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 ▷ 주민협의체사무실
 - 시설 운영단체 사무실
 - ▷ 마을카페 및 다목적실
 - 카페 및 프로그램 운영
 - ▷ 공유주방
 - 수익사업, 주방대여,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032-453-2804

시행일 : 2024년 상반기(예정)

구민을 편하게
정책을 펼치게 남동을 새롭게

남촌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남촌동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남촌동 가로환경개선사업

- 위 치 : 남촌동 560-1번지 일원
- 기 간 : '23. 5. ~ 6.
- 내 용 : 아스콘 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보도 재포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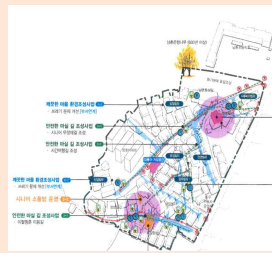
◇ 남촌동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 위 치 : 남촌동 257-5번지 일원
- 기 간 : '23. 8. ~ 10.
- 내 용 : 도시가스 메타함, 불법 광고물 방지시트, LED 건물번호판 설치 등

◇ 남촌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남촌동 265-1번지 일원
- 기 간 : '24. 1. ~ 6.
- 사업비 : 260백만원
- 내 용 : 담장정비, 틈새정원, 경관 조명 조성 등

- 위치도



문의처 :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 032-453-2983

시행일 : 2024년 1월(예정)

구민을 편하게
정책을 펼치게 남동을 새롭게

정당용 현수막게시대 지정·운영(신규)

관내 주요사거리를 중심으로 정당 및 행정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 공공용 게시대를 지정·운영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정당용 현수막게시대 지정·운영

- 운영시기 : '24. 1.
- 설치위치 : 관내 주요사거리 16개소
 - ▷ 6단 3개소, 4단 1개소, 2단 12개소
- 대 상 : 공공용(정당 및 행정)현수막
- 게시기간 : 15일 이내
- 배정방법 :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상단부터 배정
- 사 용 료 : 8,000원(1회 기준)
 - ※ 허가수수료, 도로점용료 면제
- 운영주체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위탁

문의처 :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 032-453-2285

시행일 : 2024년 1월

구민을 편하게
정책을 펼치게 남동을 새롭게

- 안전 · 교통 · 주택 분야 -

- ❖ [정보통신과] 드론 등 촬영사실 공지 방법 안내(신규)
- ❖ [안전총괄과] 구월3동 스마트 밀리지 조성(신규)
- ❖ [안전총괄과] 저화소 방법 CCTV 교체
- ❖ [도 로 과] 도림1지구(소3-15호선)도로개설 사업
- ❖ [도 로 과] 도림1지구(소2-2호선)도로개설 사업
- ❖ [치 수 과]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신규)
- ❖ [건 축 과]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신규)
- ❖ [공동주택과]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사항 안내
-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주요사항 안내

구민을 편하게
정책을 펼치게 남동을 새롭게

드론 등 촬영사실의 공지 방법 안내(신규)

‘23. 9.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술의 운영 제한)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 의사 없이 촬영한 경우 촬영을 허용할 때의 ‘드론 등 촬영사실의 공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조항) ※ 기존 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술의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에 한계	◇ 드론 촬영사실의 공지 방법 안내 - 적용대상 ▷ 업무 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개인사업자 ※ 개인 취미용 드론 등 업무 목적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공지방법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의 <메뉴> 「기업공개 서비스」→「드론 촬영사실 공지」→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신청방법 안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기재한 후 이메일(visualdata@kisa.or.kr)로 제출 ※ 드론 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술 촬영사실의 공지 방법 :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 방송 등을 활용

문의처 : 정보통신과 정보관리팀 ☎ 032-453-2123
시행일 : 2023년 9월 15일

구월3동 스마트 빌리지 조성(신규)

구월3동 내 주요 횡단보도 신호대기 장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고 인구밀집지역에 CCTV 스마트폴 설치 및 CPTED 기반 안전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신규사업)	◇ 스마트 그늘막 설치 - 위 치 : 구월3동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장소 - 내 용 : 스마트 그늘막 3개소 설치 ◇ CCTV 스마트폴 설치 - 위 치 : 구월3동 인구밀집지역 - 내 용 : CCTV 스마트폴 5개소 설치 ▷ 지능형 CCTV, 스마트텍트, 비상 안심벨, 공공와이파이 등 ◇ CPTED 기반 안전거리 조성 - 위 치 : 구월3동 인구밀집지역 - 내 용 ▷ 지능형 CCTV, 스마트텍트 설치 등 CPTED 기반 안전거리 5개소 조성

문의처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 032-453-2330 및 생활안전팀 ☎ 032-453-6180
시행일 : 2024년 상반기(예정)

저화소 방법 CCTV 교체

200만 미만의 저화소 방법 CCTV 카메라를 고화소로 교체하여, 각종 범죄 해결 및 재난 초동대응에 기여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저화소 방법 CCTV 설치현황 - 총 287개소 ▷ 130만 화소 : 199개소 ▷ 41만 화소 : 88개소	◇ 저화소 방법 CCTV 설치현황 - 기존 저화소(41만, 130만) CCTV 287개소 일체 ▷ 200만 화소로 교체 

문의처 : 안전총괄과 생활안전팀 ☎ 032-453-6180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예정)

도림1지구 소로3-15호선 도로개설사업

도림1지구 내 미개설 도로의 개설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도림1지구 소로3-15호선 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3-146호]	◇ 도림1지구 소로3-15호선 도로 개설사업 - 위 치 : 도림동 231-2번지 일원 - 개 요 : 도로개설 (L=105m, B=6m) - 추 진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 협의 후 공사 착공 

문의처 : 도로과 도시시설팀 ☎ 032-453-2723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예정)

도림1지구 소로2-2호선 도로개설사업

도림1지구 내 미개설 도로의 개설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2023년

- ◇ 도시관리계획(도림1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3-69호]
- ◇ 도림1지구 소로2-2호선 도로개설 사업 실시계획용역 추진

2024년부터는

- ◇ 도림1지구 소로2-2호선 도로개설 사업
 - 위 치 : 도림동 111-6번지 일원
 - 개 요 : 도로개설(L=160m, B=8m)
 - 추 진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 협의 후 공사 착공



문의처 : 도로과 도시시설팀 ☎ 032-453-2723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예정]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신규)

202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신규지구(행정안전부)로 간석지구 제3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침수피해 등 재난사고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 ◇ (신규사업)

2024년부터는

- ◇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 위 치 : 석정어린이공원 (간석동 610번지)
 - 규 모 : 저류시설용량(V=14,080㎥)
 - 사업기간 : '24. ~ '26. (3년간)
 - 사업내용
 - ▷ 공원 하부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관내 침수피해예방



문의처 : 치수과 치수팀 ☎ 032-453-8410
시행일 : 2024년 1월 중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신규)

집중호우 시 구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하거주 안전취약 계층에 대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

- ◇ (신규사업)

2024년부터는

- ◇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
 - 사업기간 : '24년 상반기
 - 사업대상 : 반지하주택 거주 구민 (안전취약계층 우선지원)
 - 사업내용
 - ▷ 반지하주택 개폐식
 - ▷ 방범창 무료설치(교체)
 - 사업예산 : 90,000천원 (시비50, 구비50)

문의처 : 건축과 허가팀 ☎ 032-453-2771
시행일 : 2024년 상반기[예정]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사항 안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3년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

세대수	지원금액
1,000미만	30,000천원
1,000이상	50,000천원
- ◇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인원: 11명
 - 상설화

2024년부터는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

지원한도	비고
30,000천원	공동주택별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의 합산액
- ◇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인원: 13명
 - 비상설화 (사업추진 시 구성)

문의처 :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 032-453-2793
시행일 : 2024년 1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주요사항 안내

효율적 관리비 집행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회계
감사 기준 요건을 강화하여 확대 시행합니다.

2023년

2024년부터는

- ◇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관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함.

- ◇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관련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
기준이 분양300세대 이상에서
분양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24. 1. 1. 시행
- ※ 2023년 회계연도('23.1.1.~'23.12.31.) 부터 적용

문의처 : 공동주택과 주택조사팀 ☎ 032-453-8519

시행일 : 2024년 1월